

#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

##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?

- ▶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  
면세사업자(인적용역자 포함) 전체
- ※ 전문직 사업자 제외(배우자 포함)  
- 전문직 사업자 :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 
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의사, 약사 등
- ※ 사업장 사업자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는 직전연도  
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,  
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 
필요하지 않습니다.

##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 상한액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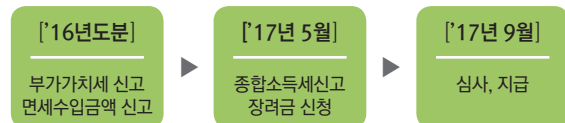
[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- 부부합산] (단위 : 만원)

| 업종 | 조정률<br>(%) | 근로장려금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자녀장려금<br>부양자녀<br>있는 가구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| 단독<br>가구 | 홀벌이<br>가구 | 맞벌이<br>가구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  | 20         | 6,500    | 10,500    | 12,500    | 20,000                 |
| 나  | 30         | 4,333    | 7,000     | 8,333     | 13,333                 |
| 다  | 45         | 2,888    | 4,666     | 5,555     | 8,888                  |
| 라  | 60         | 2,166    | 3,500     | 4,166     | 6,666                  |
| 마  | 75         | 1,733    | 2,800     | 3,333     | 5,333                  |
| 바  | 90         | 1,444    | 2,333     | 2,777     | 4,444                  |

※ 업종구분은 뒷면 ⑥번을 참고하세요

※ 적용례 : '가' 업종 수입금액 6,500만원×20% = 총급여액 등  
1,300만원

##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?



신청시 **휴대전화번호**와 **본인 계좌번호**를 기재(입력)하면  
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국세청에서는 **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**  
**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**  
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**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

☎ 국번없이 126번 [②번 누른 뒤 ④번]  
검색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▼



| 2017년 신청 |

#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
제도  
안내



## 근로장려세제(EITC)·자녀장려세제(CTC)란?

- ▶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**근로자** 또는 **사업자** 가구에 대하여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 
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,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 
제도입니다.
- ▶ 2017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 
심사(소득검증)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.
- ▶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
지급제외하며 감액 및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.

##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

- |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|
- ▶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 
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**장려금 환수**와 **2, 5년 간**  
**장려금 지급제한**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- ▶ 자영업자의 경우 **국민건강보험료**, **국민연금보험료**가 늘어날 수  
있습니다.  
-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 
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합니다.
- ▶ 신속한 심사·지급을 위해 신청시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와  
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.

## |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 용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구원 재산합계액이<br>1억원 이상인 경우        |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             |
|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장려금의 10% 차감             |
|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<br>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<br>해당세액 차감   |
|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| 지급액의 30%를 한도로<br>체납액에 충당   |
| '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<br>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 |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<br>(1일 0.03%) |

#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

# 제도 안내 | 2017년 신청기준 |

## 1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?

▶ **근로소득** 또는 **사업소득**이 있는 거주자로서  
아래(① ~ ④)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① (근로장려금 요건) 2016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('76.12.31.이전 출생)일 것  
- 부양자녀 : 18세 미만('98.1.2.이후 출생,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,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

※ (자녀장려금 요건)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

② 20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

### 총소득 기준금액

| 구 분   | 단독가구    | 홀벌이가구   | 맞벌이가구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근로장려금 | 1,300만원 | 2,100만원 | 2,500만원 |
| 자녀장려금 | -       | 4,000만원 |         |

\*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

\* 맞벌이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③ (근로장려금 요건) 201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
- (자녀장려금 요건)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

④ 기타사항

-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)일 것
-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-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

※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.

## 2 신청기간과 방법은?

▶ 신청기간 : 2017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
▶ 신청방법 : 전자신청(ARS전화 1544-9944, 모바일 홈택스앱, 인터넷 홈택스) 또는 서면신청

※ 신청안내(전자신청 인증번호) 여부는 홈택스(인터넷, 모바일), 민원24에서 확인 가능

## 3 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'연간 총소득'은?

▶ 2016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  
(비과세소득 제외, 부부소득 합산)

▶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

- 근로소득 = 총급여
-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- 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
### 업종별 조정률

| 업종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정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가 도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% |
| 나 소매업, 자동차·부품판매업, 부동산매매업, 임업, 광업, 축산·어업관련 서비스업, 그밖의 다른 업종                 | 30% |
| 다 음식점업, 제조업, 건설업, 전기·가스·증기·수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5% |
| 라 숙박업, 운수업, 금융·보험업, 상품중개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서비스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·환경복원업         | 60% |
| 마 서비스업 (부동산, 전문과학기술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,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예술, 스포츠, 여가, 수리 및 기타 개인) | 75% |
| 바 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% |

## 4 근로·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?

①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'총급여액 등'을 장려금 산정표\*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(6페이지 참조)

\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 1 「근로장려금 산정표」, 별표 11-2 「자녀장려금 산정표」

② 신청자가 감액 및 총당 등의 요건\*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.

\* 뒷면의 「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총당 등」 참조

## 5 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'총급여액 등'은?

▶ '총급여액 등'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(비과세소득과 특정소득은 제외)

▶ 총급여액 등 = 총급여액 + 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

※ 연간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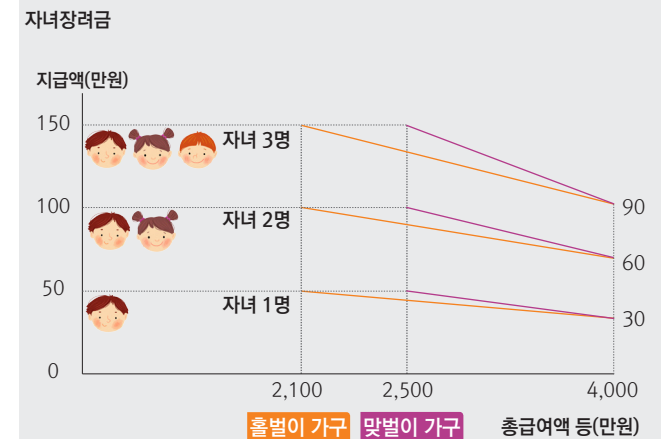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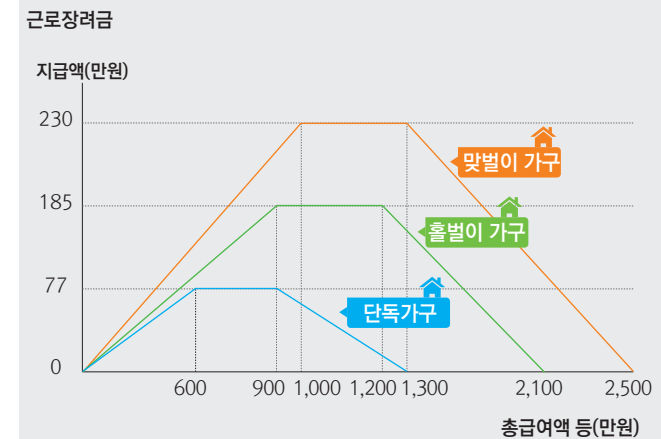
| 구 분    | 소득범위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간총소득  | 근로, 사업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 | ① 신청자격 중 ② 연간총소득 기준금액 계산 시 사용 |
| 총급여액 등 | 근로, 사업                 | ④ 산정방법 중 ① 장려금 산정 시 사용        |

※ 재산은 가구원 합산 / 소득은 부부 합산

▶ '총급여액 등'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

- 직계존비속·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
## 6 근로·자녀장려금 산정모형



※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「모의계산(화면 우측 상단)」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